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14
----------	------

발의연월일 : 2020. 10. 6.

발 의 자 : 전혜숙·조승래·진성준
오영환·김진표·양이원영
양향자·윤후덕·민병덕
정필모·고용진·위성곤
김병기·우원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년 간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842건 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586건으로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자 수 923명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이 637명으로 역시 69%를 차지함.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지급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본인 부담 치료비

금액이 발의일 현재까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취약한 연구실 안전보험은 이런 경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며 사실상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가입자 규모 때문에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위험한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 99.5%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 보험에 가입된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p> <p>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p>

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